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76
----------	-------

발의연월일 : 2026. 8. 25.

발 의 자 : 김한규 · 오세희 · 박상혁
문대림 · 문진석 · 서미화
김성범 · 한준호 · 임미애
이언주 · 박홍배 · 김태년
김동아 · 김문수 · 이주희
백승아 · 양부남 · 박정현
복기왕 · 송기현 · 이성운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하여 경영권 안정과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영농, 영어, 영축 등의 분야에서도 원활한 상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영농의 규모화, 자동화 등으로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게 영농상속공제 제도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상속인이 현행 8년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의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어 영농상속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0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를 말한다”로, “30억원”을 “5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영농이 제1항에 따른 영농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영농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둔다.

⑨ 제8항에 따른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농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 ----- -----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0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를 말한다----- -----50 억원-----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영농이 제1항에 따른 영농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영농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 심사위원회를 둔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